#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23

발의연월일: 2025. 1. 15.

발 의 자 : 윤준병 • 박민규 • 조계원

정동영・황명선・강준현

안호영ㆍ허 영ㆍ위성곤

민병덕 · 신영대 · 서영교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32조에서 재판부의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, 예외적으로 재판·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해당 단서조항으로 인해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기록의 확보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해 원활한 심리에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높음. 또한 독일의 「연방헌법재판소법」 제27조에서 모든 법원과 행 정청은 연방헌법재판소에 법률상 및 직무상 지원을 행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, 스페인의 「헌법재판소법」 제88조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모든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에 헌법소송과 관련된 기록·자료·문서 등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함.

한편, 헌법재판절차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「헌법재판소 심판 규칙」 제30조에 따라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불출석 증인에 대한 구인은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절차이므로 그 근거를일반적인 준용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법률에 직접적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 및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보다 부합함.

이에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,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송부요구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며,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2 신설, 제32조 및 제79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##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1조의2(출석불응과 구인)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구인에는 「형사소송법」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32조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이 경우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제출할수 있다.
-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1년"을 "3년"으로, "100만원"을 "3천만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증인, 감정인,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"을 "소환"으로, "자"를 "증인이나 감정인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4.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심판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의2, 제32조 및 제79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1조의2(출석불응과 구인) ①
	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
	<u>니한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.</u>
	② 제1항의 구인에는 「형사소
	송법」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
	<u>준용한다.</u>
제32조(자료제출 요구 등) 재판부	제32조(자료제출 요구 등)
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	
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	
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, 기	
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	
구할 수 있다. <u>다만, 재판·소</u>	<u>&lt;단서 삭제&gt; 이</u>
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	경우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
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	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원본을
를 요구할 수 없다. <후단 신	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
<u>설&gt;</u>	때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
	제출할 수 있다.
제7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79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<u>1년</u> 이	<u>3년</u>
하의 징역 또는 <u>100만원</u> 이하	<u>3천만원</u>
의 벌금에 처한다.	
1. 헌법재판소로부터 <u>증인, 감</u>	1 <u>소환</u>
정인,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	

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------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감정인아니한 <u>자</u>2.・3. (학<신 설>4. 정당한

-----<u>증인이나</u> 감정인

- 2. 3. (현행과 같음)
- 4.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